

과징금의 산정방법 등(제60조의3제1항 관련)

1. 자동차제작자별 과징금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(이하 "해당 연도"라 한다)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(未達成量)(g/km)에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·거래 또는 상환한 양을 감(減)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[원/(g/km)]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.
2.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
$$\text{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} = (\text{온실가스 평균배출량} - \text{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}) \times \text{판매 대수(대)}$$

가. "온실가스 평균배출량"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말한다.

나. "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"이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.

다. "판매 대수"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자별 해당 연도 판매 대수를 말한다.

3.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.

해당 연도	과징금 요율[원/(g/km)]
가. 2014년부터 2016년까지	10,000원
나. 2017년부터 2019년까지	30,000원
다. 2020년 이후	50,000원